

국토교통부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정비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및 대법원 예규의 등기신청서식과 재조사완료 등기촉탁서의 서식을 동일하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3조제1항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칭을 변경

나.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서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

대법원 예규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등기
신청서식과 동일하게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동의철회서”를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동의철회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업지구지정신청”을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로 본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신청 ☐ 동의서
☐ 동의철회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소유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 토지 현황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 동의 ☐ 동의철회)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

<u>접수</u>	<u>년 월 일</u>	<u>처리인</u>	<u>등기관 확인</u>	<u>각종 통지</u>
	<u>제 호</u>			

부동산의 표시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지적재조사 완료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지적재조사 완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촉 탁 근 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 록 면 허 세	면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첨부서류	등기촉탁서 부분 토지(임야)대장
------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열람 [] 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신청 항목	[] 지적재조사지구 에 관한 증명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조정금 산정에 관한 증명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열람 []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u>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 동의철회서</u>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동의서 등) ① ----- ----- ----- ----- <u>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 동의철회서</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토지현황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는 <u>지적재조사사업지구</u> 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제4조(토지현황조사) ① ----- ----- ----- -- <u>지적재조사지구</u>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